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0
----------	------

발의년월일 : 2010. 10. 8.
발 의 자 : 김철진 의원 외 8인

□ 대안의 제안경위

- 2010년 9월 13일 나정숙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2010년 9월 13일 함영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함.

□ 주요골자

-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도 우수 농축산물의 범위에 포함(안 제2조).
-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로 정함(안 제4조).
- 지원신청은 유치원,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5조).
-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도록 정함(안 제6조).
-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고, 매년 정산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와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8조).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시범사업의 실시, 교육프로그램 등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10조).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산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
3.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 나.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축산물
 - 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 마. 「경기도 농특산물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 식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2.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4. 학교급식 개선을 실현할 재원 조달 방안
- ②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으로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친환경 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공급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소재하며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대상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② 급식비용 지원 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의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의 적정 공급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부당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식재료 공급자의 선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요구할 경우 급식경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장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 개선에 따른 계획과 제5조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급식 담당 국장 및 과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의원
 2. 학부모 단체 추천인
 3. 교원 단체 추천인
 4.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5. 생산자 단체 추천인
 6. 학교 영양사회 추천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담당 주

사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
의 심의 · 의결
4.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급식에 사용될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학교급식 사업의 홍보, 식생활
교육을 위해 안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
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
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산
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 집행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목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 <개정 2008.3.17.>

2. 적영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3.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5조(경비의 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경비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써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경기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및 「경기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①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